

## 분과심포지움 : 완경

# 일본의 알권리 프로그램

Hisanaga Naomi  
산업보건연구원

## 1. 머릿말

근로자가 직장에 존재하는 유해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한 탓에 노동재해나 직업병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종래부터 노동안전위생법이나 법령에 의한 다양한 노동위생교육이나 화학물질(91물질)의 성분, 취급상의 주의표시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신재료나 신기술의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직장에서의 화학물질등의 위험 유해성을 주지시키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각국에 공통된 상황이며, 1990년의 ILO총회에서는 [직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시 안전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었다.

## 2. 화학물질의 위험유해표시제도

이와같은 경과에 입각하여 일본의 노동성은 1992년에 [화학물질 등의 위험유해성 등의 공표에 관한 지침](고시 제 60호)를 공표하였다. 이 지침은 2년간의 주지기간 후에 1994년 4월부터 실제로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지침은 화학물질등의 적절한 관리와 취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등에 관

한 필요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와 그것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며, 그 대상을 모든 화학물질 등으로 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1) 화학물질 등의 위험유해성이나 그것에 대응하는 취급방법 등을 적절히 표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것, (2) 화학물질 등의 양도제공자는 이 기준에 입각하여 통일된 표시를 할 것, (3)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것을 활용하고 근로자에게 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의 위험유해성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적절한 취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것 등이다.

위험 유해화학물질 등의 경우에 양도제공자가 실시하는 표시의 종류는 화학물 등 안전(Data Sheet (MSDS))의 교부와 용기나 포장에 대한 위험유해성의 종류의 기재이다.

위험유해화학물질 등이란 법규 등에 제시된 물질을 말하며 (1) 폭발성, (2) 고압가스, (3) 인화성, (4) 가연성, (5) 자연발화성, (6) 禁水性, (7) 산화성, (8) 급성중독, (9) 부식, 자극성, (10) 특정 유해성(암원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최기형성, 감작성, 만성독성)등의 어느 물질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MSDS기재항목은 (1) 명칭, (2) 성분과 함유량, (3) 물리화학적 성질, (4) 위험, 유해성의 종류, (5) 위험 유해성의 내용과 정도, (6) 저장이나취급상의주의, (7) 사고시의 응급조치, (8) MSDS 작성자 명과 주소, (9) 화학식 또는 구조식, (10) 관보공시 정리 번호, (11) CAS 번호, (12) 국적분류와 국적번호, (13) 적용법령 이다.

MSDS를 수취한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로서는 (1) MSDS를 항상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구비하여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2)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할 것, (3)MSDS를 활용하여 노동재해를 방지한다, (4) 안전위생위원회 등에서 적절한 취급방법을 조사하거나 심의할 것,이 기재되어 왔다.

용기나 포장에 대한 표시항목은 (1) 명칭, (2) 성분과 함유량, (3) 위험유해성의 종류, (4) 인체에 대한 작용, (5) 저장 내지는 취급상의 주의, (6) 표시를 한자의 성명과 주소 이다.

위험유해화학물질 등 이외의 화학물질의 경우에, 양도제공자가 하는 표시의 종류는 용기나 포장에 대한 000 명칭의 표시이다.

### 3. 금후의 과제

직장의 위험유해요인을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나 활동은 이전부터 있었으며, 노동재해·직업병 예방에 성과를 올려왔지만, 동시에 노동재해·직업병의 발생은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실시된 화학물질 등의 위험유해표시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정보공급면에서 커다란 진보를 가져왔으며 노동재해·직업병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금후의 과제로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이 적절히 소규모사업소까지 포함하여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설립이 개시된 지역산업보건센타(1993년 47개소 설치, 최종적으로는 전국에 약 350개소)와 도도부현 산업보건센타(1993년 6개소 설치, 최종적으로는 도도부현에 1개소씩 합계 47개소)가 촉진적인 역할을 다하리라 기대하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활동전개에 달려있다.

두번째로, 지침에 더욱 내실을 기할 것과 화학물질이외의 위험유해요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760만명)은 ‘노동안전위생환경대책지침’(1993)에 대하여 (1) 노동자가 직장환경, 기계설비를 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에 대해 알 권리 (2) 안전건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의 참가를 보증하고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필요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권리 (3) 생명 혹은 건강에 명확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벗어나 노동을 거부할 권리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을 기입할 수 있는 직업력수첩의 교부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포함하여 政·勞·使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실효성이 높은 시책이 전개되어져야 한다.